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023
----------	------

2024년 9월 11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시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2046)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'전임강사'를 '조교수'로 함(안 제4조제1항제2호).
- 2)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(안 제4조의2제2항제4호)
- 3)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'기부채납일'이 아닌 '사용허가를 받은 날'로 개정함 (안 제16조)
- 4) 조문 띄어쓰기, 약칭의 사용, 자구 수정·보완함(안 제3조 등 16개 조항).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각 호”를 “각 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용도이외”를 “용도 외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안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정을 요하는”을 “시정이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안 제16조 중 “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18조의2제1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안 제25조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가”를 “시가”로 한다.

안 제26조제3항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“서울특별시가”를 “시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항

제6호 중 “서울시가”를 “시가”로,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한다.

안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감면”을 각각 “감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감면 : 학생수”를 각각 “감경 : 학생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에서 감면”을 “범위에서 감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시의”로, “범위 내에서 감면”을 “범위에서 감면”으로 한다.

안 제31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금고은행”을 “시 금고(「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제2호 전단 중 “시금고”를 “시 금고”로 한다.

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중 “서울특별시가”를 각각 “시가”로 한다.

안 제38조제1호, 같은 조 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안 제39조의2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」”를 “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되며”를 “맡고”로, “위촉하되”를 “임명 또는 위촉하되”로, “과반수이상”을 “과반수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주사가 된다”를 “주무관이 맡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위원과반수”를 “재적위원 과반수”로 한다.

안 제39조의3제2호 중 “치료를 요하는”을 “치료가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안 제47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안 제50조 단서 중 “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한다.

안 제52조 중 “사용대상 공무원”을 “사용자”로 한다.

안 제7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긴급처분을 요하는”을 “긴급처분이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수선을 요하는”을 “수선이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7.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

안 제72조제1항제1호 중 “요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(생략)	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	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재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(도시·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)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2호를 제외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	3. (현행과 같음)	3. ----- ----- <u>각 목</u> ----- ----- -----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사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용도이외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(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⑤ (현행과 같음)	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용도 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	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, 행정학, 회계학, 토목공학,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<u>전임강사</u>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교수</u> ----- -----	2. (개정안과 같음)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(생략)	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	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	② (현행과 같음)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 <u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</u> 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<u>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u>	4. (현행과 같음)	<삭제>
제7조(실태조사) ① ~ ③ (생략)	제7조(실태조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제7조(실태조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<u>시정</u>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④ ----- <u>시정</u>이 <u>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<u>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6조(무상사용기간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6조(무상사용기간) ----- ----- ----- <u>사</u> <u>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
<p>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	<p>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<u>서울시</u>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----- -----</p>
<p>2.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<u>서울시</u>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	<p>2.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</p>
<p>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·매</p>	<p>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조치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 사용하거나 <u>서울특별시</u>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·단체·법인·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</p>	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5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또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 중소기업 창업·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<u>서울특별시</u>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</p>	<p>5. (현행과 같음)</p>	<p>5. -----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6. <u>서울시</u>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<u>서울특별시</u>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</p>	<p>6. (현행과 같음)</p>	<p>6. <u>시가</u>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7. <u>서울특별시</u>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점유·사용하는 경우</p>	<p>7. (현행과 같음)</p>	<p>7. <u>시의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8. ~ 14. (생략)</p>	<p>8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	<p>8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⑥·⑦ (생략)</p>	<p>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	2. (현행과 같음)	2. ----- ----- - 감경-----.
가. ~ 바. (생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	3. (현행과 같음)	3. ----- ----- - 감경-----.
가. ~ 사. (생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현행과 같음)
2. 75퍼센트 감면 :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	2. (현행과 같음)	2. ----- 감경 : 학생수----- ----- -----
3. 50퍼센트 감면 :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	3. (현행과 같음)	3. ----- 감경 : 학생수----- 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	④ (현행과 같음)	④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 받은 자(이하 "전세자" 라 한다)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.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전세지는 제1호에 따라 정산 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<u>신금고</u>에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.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	<p>2. ----- ----- <u>신</u> <u>금고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,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</p>	<p>4. (현행과 같음)</p>	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, 다만 <u>서울특별시</u>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		----- ----- ----- 시 ----- ----- -----.
6. ~ 10. (생략)	6. ~ 10. (현행과 같음)	6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 <u>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</u> 」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	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 되도록 한다.	③ (현행과 같음)	③ ----- ----- <u>맡고</u> ----- ----- <u>임명 또는 위촉하되</u> ----- ----- <u>과반수가</u>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 및 서기는 재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.	⑥ (현행과 같음)	⑥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무관</u> ----- ----- <u>이 맡는다.</u> -----
⑦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⑦ (현행과 같음)	⑦ ----- <u>재적위원 과반수</u> ----- -----.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	⑧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		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</u>	7. (현행과 같음)	7. <u>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</u>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	8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1. 물품의 성질상 <u>긴급처분을</u> 요하는 물품	1. (현행과 같음)	1. ----- <u>긴급처분이</u> 필요한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수선을 요하는</u>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	3. (현행과 같음)	3. <u>수선이 필요한</u> ----- -----
4·5. (생략)	4·5. (현행과 같음)	4·5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<u>서울특별시</u> 소속행정기관,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, 광역시, 도에 대하여 행한다. 다만,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<u>서울특별시</u> 소속행정기관, 관할구역 안	③ (현행과 같음)	③ ----- ----- 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시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.		-----.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<u>서울특별시</u>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	④ (현행과 같음)	④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	⑤ (현행과 같음)
제72조(불용품의 매각)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.	제72조(불용품의 매각) ① (현행과 같음)	제72조(불용품의 매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매각대금이 매각에 <u>요하는</u>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	1. (현행과 같음)	1.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	2.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각 호”를 “각 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용도이외”를 “용도 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전임강사”를 “조교수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정을 요하는”을 “시정이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25조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가”를 “시가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“서울특별시가”를 “시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서울시가”를 “시가”로,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감면”을 각각 “감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감면 : 학생수”를 각각 “감경 : 학생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에서 감면”을 “범위에서 감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시의”로, “범위 내에서 감면”을 “범위에서 감면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금고은행”을 “시 금고(「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제2호 전단 중 “시금고”를 “시 금고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중 “서울특별시가”를 각각 “시가”로 한다.

제38조제1호, 같은 조 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제39조의2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」”를 “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되

며”를 “맡고”로, “위촉하되”를 “임명 또는 위촉하되”로, “과반수이상”을 “과반수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주사가 된다”를 “주무관이 맡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위원과반수”를 “재적위원 과반수”로 한다.

제39조의3제2호 중 “치료를 요하는”을 “치료가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0조 단서 중 “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한다.

제52조 중 “사용대상 공무원”을 “사용자”로 한다.

제7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긴급처분을 요하는”을 “긴급처분이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수선을 요하는”을 “수선이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7.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

제72조제1항제1호 중 “요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(생 략)	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 재산과 일반재산 중 재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(도시·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)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2호를 제외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	3. ----- <u>각</u> <u>목</u> ----- -----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<u>용도이외</u> 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(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<u>용도 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4조(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, 행정학, 회계학, 토목공학,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<u>전임강사</u> 이상으로 재	2. ----- ----- ----- <u>조교수</u> -----

현행	개정안
직경력이 있는 자	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(생략)	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	<삭제>
제7조(실태조사) ① ~ ③ (생략)	제7조(실태조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<u>시정을 요하는</u>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	④ ----- <u>시정이 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<u>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	제16조(무상사용기간) ----- ----- ----- <u>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
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0 이상으로 한다.	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 사용하거나 <u>서울특별시</u> 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·단체·법인·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5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또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 중소기업 창업·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<u>서울특별시</u> 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	5. -----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
6. <u>서울시</u> 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<u>서울특별시</u>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	6. <u>시가</u>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
7. <u>서울특별시</u> 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점유·사용하는 경우	7. <u>시의</u> ----- -----
8. ~ 14. (생략)	8. ~ 14. (현행과 같음)
⑥·⑦ (생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	2. ----- ----- 감경-----.
가. ~ 바. (생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	3. ----- ----- 감경-----.
가. ~ 사. (생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75퍼센트 감면 :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	2. ----- 감경 : 학생수----- -----
3. 50퍼센트 감면 :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	3. ----- 감경 : 학생수----- 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별 위에서 감경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	⑥ ----- ----- 시의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범위에서 감면----- -----.</p>
<p>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<u>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</u></p>	<p>③ ----- <u>시</u> 금고(「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. <u>이하 같다.</u>)----- -----.</p>
<p>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라 세입·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,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에 따른다. 다만, 전세금의 이자 수입은 <u>서울특별시</u> 수입으로 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시 -----.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(이하 "전세자"라 한다)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.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전세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<u>시</u>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.</p>	<p>2. ----- ----- <u>시</u> 금고----- -----.</p>
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</p>	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,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, <u>서울특별시</u>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	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시가 ----- ----- -----</p>
<p>5.·6. (생략)</p>	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
<p>7. <u>서울특별시</u>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</p>	<p>7. 시가 ----- ----- ----- ---</p>
<p>8. (생략)</p>	<p>8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·③ (생략)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	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<u>서울특별시</u> 소유가 아닌 건물(단,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.)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</p>	<p>1. ----- 시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야 한다.	-----.
6. ~ 10. (생략)	6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」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인 되도록 한다.	③ ----- <u>말고</u> ----- <u>입명 또는 위촉하되</u> ----- - <u>과반수가</u>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 및 서기는 재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<u>주사가 된다.</u>	⑥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무관이 맡는다.</u>
⑦ 심사위원회는 <u>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</u>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⑦ ----- <u>재적위원 과반수</u> ----- -----.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
제39조의3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39조의3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	2. --- <u>치료가 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3. 4. (생 략)	3. 4. (현행과 같음)
제47조(종합청사화의 도모)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<u>범위</u>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	제47조(종합청사화의 도모) ①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0조(사용허가)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1급·2급 관사의 사용은 <u>허가</u> 를 요하지 아니한다.	제50조(사용허가) ----- -----. ----- <u>그</u> <u>러</u> 하지 아니한다.
제52조(관사 관리대장의 비치)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<u>사용대상</u>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한다.	제52조(관사 관리대장의 비치) ----- ----- ----- <u>사용자</u> ----- -----.
제71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·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	제71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수선을</u> 요하는 물품으로서 <u>수선함이</u> <u>비경제적인</u> 물품	7. <u>수선이</u> 필요한 물품으로서 <u>수선하는</u> 것이 <u>비경제적인</u> 물품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 물품의 성질상 <u>긴급처분</u> 을 요하는 물	1. ----- <u>긴급처분이</u> <u>필요한</u> -----

현행	개정안
품	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	3. 수선이 필요한 ----- -----
4. 5. (생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<u>서울특별시</u> 소속행정기관,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, 광역시, 도에 대하여 행한다. 다만,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<u>서울특별시</u> 소속행정기관,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.	③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<u>서울특별시</u>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72조(불용품의 매각)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.	제72조(불용품의 매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	1.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